

업무 제휴 협약서

"코레일관광개발(주) 청도테마지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TK트래블(이하 "파트너사"라 함)은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운영사"와 "파트너사"간에 협의된 상품에 한 하여 "파트너사"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업무의 제반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업상품)

"운영사" 상품의 "사업"을 "파트너사"가 진행한다.

1.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권, 패키지권 티켓판매
2. 추가 상품은 상호 협의 후 진행.

제3조 (용어의 정리)

본 계약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본 계약의 이용권 (이하 "티켓")이라 함은 "운영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모바일권, 바코드, 인증번호, 지류권방식)을 말한다.
2.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판매처(이하 "채널")라 함은 "운영사"와 "파트너사"가 사전 합의한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상의 판매처를 말한다.
3. 고객이라 함은 "운영사"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채널을 통하여 "파트너사"로 부터 티켓을 구매한 자를 말한다.
4. 본 계약의 "판매가"라 함은 "파트너사"가 위 제2항의 채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티켓가격을 말한다.
5. 본 계약의 "입금가"라 함은 "파트너사"가 채널에서 고객에게 판매한 티켓에 대해 "운영사"에게 지급하는 티켓의 정산 단가를 말한다.
6. 티켓 대금 정산은 "후정산" 방식으로 한다. "후정산"이라 함은 "파트너사"의 채널을 통하여 판매된 티켓으로 "운영사"의 "시설"에 이용한 권종 및 수량에 대해 익월에 "파트너사"가 "운영사"에게 입금가 기준의 대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업무의 범위 및 준수)

1. "파트너사"는 본 "사업"의 모바일권, 관리자페이지를 개발 및 마케팅 업무전체, 고객관리, CS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2. "운영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의 권한을 "파트너사"에게 부여한다.
 - ① 제2조 사업 상품의 전항
 - ② 기타 상호 협의된 상품
3. 상품에 대한 티켓은 "파트너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바일권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판매 및 사용 처리, 통계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운영사"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관리, 모바일 발송에 따른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한다.
5. "파트너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하부 영업조직을 구축 할 시 "운영사"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 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운영사"와 "파트너사"는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 이익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 추진 중 중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사"와 "파트너사"는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운영사"와 "파트너사"는 계약업무 수행 시 획득한 모든 정보의 유출방지 및 기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3. "운영사"는 "파트너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가. "운영사"와 "파트너사"는 고객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운영사"와 "파트너사"는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 다. "파트너사"는 영업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광고 또는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하되, "운영사"는 "파트너사"에 "운영사"의 로고 및 이미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한다.
 - 라. "파트너사"는 판매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① "파트너사"는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운영사"의 이미지와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② "파트너사"는 판매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가격은 "운영사"와 "파트너사"가 사전에 협의한 요금체계를 따르며, 협의 되지 않은 부분은 "운영사"의 승인 후 결정한다.
 - 마. "파트너사"는 광고·홍보 인쇄물 제작 시 사전에 "운영사"와 협의 후 진행한다.

제 6 조 (상품, 정산방법)

"파트너사"는 "사업" 진행 시 시즌을 구분한 판매가로 진행하고 정산은 입금가로 후정산 입금 한다.

1. 상품 및 입금가

상 품	입금가	판매기간	비 고
주중권	정상가의 20%	계약기간內	
주말권 / 공휴일권	정상가의 10%	계약기간內	

※ 판매상품 및 구성, 수수료등 계약이후 추가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상호 동의 후 진행함.

2. 상품의 판매 금액은 "파트너사"의 재량으로 하되, 시즌별 정상가(현장판매가)는 "운영사"의 정책에 따

르며 "운영사"와 "파트너사"는 월단위로 "파트너사"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파트너사"는 "운영사"에게 정산서를 익월 5일내 제출하여 상호 판매금액에 대한 대사 후 상호 이견이 없을 시 "운영사"는 "파트너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월 15일에 "파트너사"는 "운영사"의 지정한 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한다.

단, 입금 해당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전일(평일기준) 입금한다.

3. 추가판매 상품 및 추가 정산방법은 "운영사"와 "파트너사" 상호 협의 후 정한다.

제 7조 (홍보 및 광고의 의무)

1. "파트너사"는 "운영사"가 요청하는 경우 "파트너사"의 영업점 및 판매망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등은 "운영사"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사업"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할 수 없다. 단, "파트너사"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는 "운영사"의 사전 승인 후 진행 한다.

제 8 조 (통지의무)

1. "운영사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사"는 즉시 "파트너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파트너사"는 입장권 구입고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파트너사"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즉시 "운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운영사"와 "파트너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며, 기간만료 3개월전 상호 서면 협의가 없을시 동일조건으로 1년씩 연장한다.

제 10 조 (준수사항)

1. "파트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여 업무를 진행하거나, 채널 또는 고객, 티켓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오해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트너사"가 전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 "운영사"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운영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 ② 주요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
 - ③ 해산, 파산, 회생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한 경우
 - ④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⑤ "파트너사"의 채널 또는 고객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제3자와 분쟁 또는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최고를 받고도 영업일 5일 이내에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는 귀책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 해지시의 정산)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판매 중지한다. 단, "파트너사"의 기 판매분 고객에 대하여는 발권을 보장하며, "파트너사"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채널, 구매 예정자 등에게 이를 적법하게 해명하는 등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상호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파트너사"의 대리인·직원 및 하수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영사"는 책임이 없으며, "파트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 14 조 (불가항력)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화재,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분쟁, 기타 쌍방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제 15 조 (비밀유지의 의무)

1. "파트너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고객정보, 기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은 "운영사"와 "파트너사"의 사용인, 하도급자 등에게도 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적용된다.
3. "운영사"는 공공기관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16 조 (완전계약)

본 계약 및 본 계약에서 언급한 서류, 계약서는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계약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 17 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 18 조 (조항의 해석)

본 계약서에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의무가 있을 때에는 "운영사"와 "파트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과 질서에 따른다.

위 계약 성립의 입증 서류로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01. 01.

"운영사"

상 호 : 코레일관광개발(주) 청도테마지사

사업자NO : 824-85-00325

주 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46-51

대 표 : 정 현 우



"파트너사"

상 호 : TK트래블

사업자NO : 417-70-01307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17 문정빌딩 302호

대 표 : 강 일 구

